

연구실(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 정	2007. 4.
개 정	2007. 9.
개 정	2013. 5.
개 정	2015. 9.
개 정	2018. 1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와 실험·실습에 관련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연구실(실험실) 사고피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계 법령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내에 과학기술분야 연구(교육)활동을 위해 설치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준비실 등 연구시설 및 실험실습실(이하"연구실"이라 한다)과 이 시설에 소속된 학생, 연구보조원, 연구원(이하"종사자"라 한다)과 실험실 관리책임자 및 업무상 출입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개정 2015.09.07.)

제3조 (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실험실습실·연구재료, 준비실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1의1.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신설 2015.09.07.)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3.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실험실습실별로 지정된 안전관리 책임교수나 부속기관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말하며, 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7.)

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실험실습실별로 지정된 안전관리 책임조교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의1. "일상점검"이라 함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 활동 전에 연구실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신설 2015.09.07.)

6.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 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8.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개정 2015.09.07.)

9.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본 대학의 총장과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를 보좌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관리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7.)

10. "유해인자"라 함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신설 2015.09.07.)

1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실험실습,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09.07.)

제2장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제4조 (설치 및 운영) 본교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실안전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개정 2018.12.18.)

1.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총장으로 하고, 총무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산학협력단장, 입학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이외에 다음 각 목의 해당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개정 2018.12.18.)

가.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

나. 연구실책임자

다. 연구실안전담당자

라. 연구활동종사자(신설 2015.09.07.)

1의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인 위원은 그 신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위원의 직에서 해직되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09.07.)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기능)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8.12.18.)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그 책임과 권한의 부여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5. 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8. 안전관리에산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10.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연구실책임자의 책무) 해당연구실별로 지정된 연구실책임자의 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9.07.)

1. 해당 학과(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5.09.07.)
2. 해당연구실별로 일상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일상점검일지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7.)
3. 해당연구실별로 실험 및 연구활동 직전에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험할 내용과 기기의 취급 조작요령 및 통제사항과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숙지 시켜야 한다.
4. 해당연구실별로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험할 내용과 기기의 취급 조작요령 및 통제사항, 사고발생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하여 매일 한 시간 이상씩 충분히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숙지 시켜야 하며, 교육·훈련내용 및 이수현황에 대한 근거를 작성 해야한다.
5.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연구실험실을 관리하기 위해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중점 관리한다.
 - 가. 연구 활동 종사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의 제공
 - 나. 안전보호장비, 개인보호구, 환기시설, 건강검진 등의 제공
 - 다. 안전교육의 이수에 관한 사항
 - 라. 연구실 안전수칙, 비상시행동요령 및 안전표지판 부착하고 안전지침을 비치
 - 마. 연구실의 모든 사고에 대한 기록관리 및 보고
 - 바.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의 강구 (개정 2015.09.07.)
6. 해당연구실 별로 연구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 (신설 2015.09.07.)

제7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 해당연구실별로 지정된 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안전관리 책임자의 따라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5.09.07.)

1. 연구실 사고 발생 시에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와 조언
2. 사고예방을 위한 순회점검 및 연구실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지도와 조치 건의
3. 연구실 상황에 따라 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
4. 안전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

제9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책무) 해당 연구실에 소속되어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신 및 주위의 안전을 도모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교육의 이수
2. 해당 연구실 안전수칙, 비상시행동요령 및 안전지침의 숙지 및 준수
3. 안전에 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강구
4.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제3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제10조 (자체안전점검) 지정된 연구실안전관리 책임자는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연구실 자체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자체안전점검표에 의하여 매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 해당연구실의 점검 결과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연구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자체점검의 기록은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점검 시에 확인한다.(개정 2015.09.07.)

제11조 (안전점검)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07.)

1. 개인안전 장비관리
2. 전기 안전
3. 소방 안전
4. 화학약품관리
5. 폐기물 안전(감염물, 동물 사체, 폐수)
6. 가스 및 위험물 안전
7. 기계설비 안전
8. 기타 연구실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

제12조 (정밀안전진단)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판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12조의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7.)

제13조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안전교육은 그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며 교육시간 및 교육일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용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며, 기타의 조치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 (점검기록 등의 비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사항
2. 학교안전관리규정 및 자체 안전관리규정
3. 자체점검 기록
4. 안전교육 기록
5. 기기 및 분석기기의 수리 내역
6. 시약 및 위험물 사용량 확인과 보존 상태 이상 유무
7. 폐기물 안전(감염물, 동물 사체, 폐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제16조 (실험실별 안전수칙 등)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안전수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게 연구실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7.)

제16조의1 (사고조사 구성 및 운영)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09.07.)

1.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2.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3. 그 밖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제16조의2 (사고보고)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및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9.07.)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사고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6조의3 (사고대응매뉴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사고 대비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연구실에 전파하고, 연구실책임자는 필요한 세부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을 수립한다. (신설 2015.09.07.)

제16조의4 (보험)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09.0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09.07.)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신설 2015.09.07.)
 - 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제16조의5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09.07.)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연구실에서 연구과제수행시 해당과제 인건비 총액의 1~2% 안전관리비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③총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 사용 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6 (안전수칙 작성 등) 연구실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고 당해 연구실에 게시되도록 한다.(신설 2015.09.07.)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공통안전수칙, 일반안전수칙, 위험물·폐기물안전수칙
2. 연구실책임자 : 해당 연구실에 맞는 안전수칙.

제4장 보 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